

## 본회 임원 선거 규정

본회 제14대 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05년 1월27일 제15대 임원선거가 실시된다. 본회 회원 자격을 2년 연속 유지하고 사슴농장을 10년 이상 운영한 회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후보출마 자격이 부여된다. 본회 임원 선거 규정 전문을 게재한다.<편집자 주>

**제 1조[목적]**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[선출할 임원]** 본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.  
회장 1인, 부회장 3인, 이사 16인, 감사 2인.

**제 3조[임원의 자격 제한]** ① 본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령 및 본회 정관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다음 각 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 
1. 임원 선출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사슴농장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원  
2. 정관 및 회원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을 2년이상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  
② 임원으로서 ①항의 결격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한 때는 해당 임원은 자연 해임된다.

**제 4조[선거인]** ① 임원선거는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한다.  
② 총회구성원이 아닌 회장 후보자에 선거권을 부여한다.

**제 5조[선거관리]** ① 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, 위원 4인으로 임원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  
② 선거관리 위원의 선임은 선거직전 이사회에서 인선한다.  
③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사무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 6조[선거공고]** ① 임원선거는 선거 14일전(발신일 기준) 서면우편으로 한다.  
② 선거공고시 일시, 장소, 선거인수, 선출할 임원, 임원자격조건, 후보등록 조건 및 구비서류를 표시해야 한다.

**제 7조[후보등록]** 임원 직위별 후보등록은 다음에 의한다.  
1. 회장 후보자는 총 대의원수의 10%에 해당하는 수의 대의원으로부터 받은 회장후보추천서와 후보등록신청서 및 소견서, 기탁금 3백만원을 선거 7일전까지 임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회장후보추천서는 1대의원 1인추천에 한하며, 추천 대의원수는 정하는 수에 부족 또는 초

과할 수 없다. 총 대의원수의 15% 미만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, 기탁금은 본 회 일반회계에 귀속된다.

2. 부회장 후보는 선출된 회장이 부회장 후보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
3. 이사후보는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추천한 이사후보 명단을 선거관리 위 원장에 제출한다.
4. 감사후보는 선거전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장에 감사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.

**제 8조[회장후보고지]** 회장후보 등록 마감 즉시 인적사항과 소견사항을 대의원에 고지한다.

**제 9조[득표활동]** 등록을 필한 회장 후보자는 선거전일까지 득표활동을 할 수 있다.

**제10조[득표활동의 제한]** ① 다음의 방법으로 득표활동은 할 수 없다.

1. 허위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,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행위
2. 금전으로 대의원을 매수하는 행위
3.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에 고지한 소견서 외 유인물 및 출판물에 의한 득표활동

**제11조[등록무효]** 제10조와 관련하여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.

**제12조[회장선거]** 회장선거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.

1. 소견발표 : 회장 후보자는 협회운영과 양륙발전에 관한 소견을 기호(가, 나, 다) 순으로 발표하 되 후보당 10분 이내로 한다.
2. 투 표 : 선거관리 간사의 대의원 호명순으로 비밀이 보장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.
3. 개 표 : 후보자 추천 참관인 입회하에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계표한다.
4. 당선발표 : 임원선거 관리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발표하고 다수득표자 를 회장 당선자로 선언한다.

**제13조[부회장, 이사선거]** ① 부회장, 이사의 선거는 다음에 의한다.

1. 부회장 : 당선된 회장은 부회장 정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로 선출한다.
2. 이 사 : 회장, 부회장이 협의추천한 이사 후보를 총회의 동의로 선출한다.

② 총회는 추천된 후보의 일괄 또는 후보별 동의를 할 수 있다.

**제14조[감사선거]** 등록된 감사후보는 무기명 비밀 투표 또는 기립표결로 선출하며 득표 순 정원을 당선 인으로 한다.

**제15조[구비서류제출]** 선출된 임원은 취임동의서, 이력서,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(공증용) 등을 선출 후 10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
**제16조[시행]** 본 규정은 2002년 10월 4일 개정 시행한다..